

#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제1항에서 제4항)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3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## 1.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목적

-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기관을 지정·운영

## 2.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

- 한국부동산개발협회
  - (대표자) 김승배(金升培)
  - (주 소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11층 한국부동산개발협회
  - (위탁업무)
    -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
    -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
    - ③ 부동산개발업의 양도·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
    - ④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, 자본금의 변경,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

## 3. 위탁기간

- 2022년 12월 1일 ~ 2027년 11월 30일 (5년간)